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522

발의연월일: 2021. 1. 20.

발 의 자:진선미·황운하·김영배

남인순 · 송갑석 · 안호영

김민철 · 김원이 · 김윤덕

장철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승차한 상태로 상품의 구매가 가능한 일명 드라이브스루 매장이 증가하면서 상품을 주문하기 위해 이동하는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도로에 다른 도로나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관리청의 허가(이하 "연결허가"라 함)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연결허가를 받으려는 시설이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인근으로 어린이들의 통행이 많은 어린이보호구역에 위치하는 경우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도로관리청이 승차한 상태로 상품의 구매가 가능한 시설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한 연결허가를 할 때 해당 시설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 보호구역에 있는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드라이

브스루 매장의 무분별한 설치를 제한하여 어린이들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4항 신설).

법률 제 호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도로관리청은 승차한 상태로 상품의 구매가 가능한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한 연결허가를 할 때 해당 시설이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 보호구역에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08조 중 "제54조"를 "제52조, 제54조"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2조(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제52조(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① ~ ③ (생 략)	① ~ ③ (현행과 같음)
<u> <신 설></u>	④ 도로관리청은 승차한 상태
	로 상품의 구매가 가능한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에 대한 연결허가를 할 때 해
	당 시설이 「도로교통법」 제1
	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
	이 보호구역 내에 있는 경우에
	는 해당 어린이 보호구역에 있
	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
	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의 학교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u>야 한다.</u>
<u>④</u> · <u>⑤</u> (생 략)	<u>⑤</u> ・ <u>⑥</u> (현행 제4항 및 제5항
	과 같음)
제108조(도시・군계획시설 도로	제108조(도시・군계획시설 도로
등에 대한 준용) 제10조 각 호	등에 대한 준용)
에 열거된 도로 외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군	
계획시설사업으로 설치된 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	

는 제2조제2호 · 제9호, 제4조, 제31조제1항, 제32조부터 제37 조까지, 제54조, 제55조, 제61조 부터 제66조까지, 제67조(제72 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를 포함한다), 제68조, 제69조 (제72조제4항,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 70조(제72조제4항, 제94조에 따 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2조, 제73조, 제75조부터 제 77조까지, 제81조, 제83조부터 제85조까지, 제89조, 제90조부 터 제93조까지, 제95조부터 제9 9조까지, 제101조부터 제103조 까지, 제106조, 제107조, 제111 조, 제113조제1항제2호, 제114 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u>제52조, 제54조</u>